

학교 교육 발전과 올바른 자녀 교육에 정성을 다하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2020.06.11.) 시행되어 본교에서는 학교 교권 보호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공존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육을 만듭니다. 교사가 흔들리면 학생도 흔들립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양질의 교육을 만들고 양질의 교육은 건강한 인재를 만듭니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참다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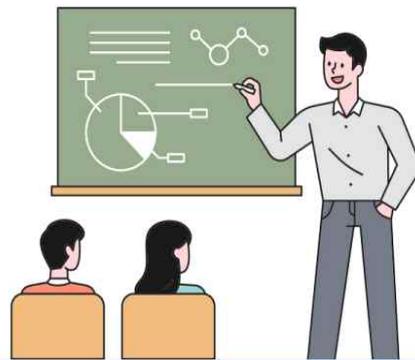
학교란, 학생의 학습권을

국가와 학부모로부터 위임받아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전인적인 교육을 수행해요.
바로,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가 '**선생님**'이죠.



우리 아이를 책임지는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은 얼마나 보호되고 있을까요?

선생님이 학생과의 교육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과 선생님의 교육권을 모두 보호하는 것!



이처럼, 우리나라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위법**'으로
선생님의 지위와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선생님의 지위와 교육활동 보호를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행위는
최근 5년간 2,300여건** 보고되고 있어요.
또한,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했어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통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건수	2,616	2,566	2,454	2,662	1,197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비율



출처: 교육부 주관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도 명시하고 있어요.

제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는 경우 보호자도 함께 참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며 (관할청 부담 후 구상권 행사),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구경에 해당될 경우 관할청은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합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특정한 부분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보는 앞에서 선생님 협담이나 전화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아이의 다친 마음을 잘 들어주고 이후에 선생님께 연락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면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1. 가정통신문·학교알리미를 활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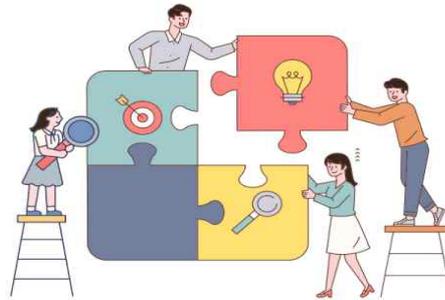
02. 학교운영위원회·공개수업 등에 참여해 보세요.

03. 학부모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해 보세요.

04. 학부모 총회 및 각종 부모 교육에 참여하거나 학부모 상담 주관을 활용해 보세요.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마련**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자녀를 사랑하고 바르게 성장하길 바라는 학부모의 마음과 **학생을 아끼고 성장을 돕고자 교육하는 선생님의 마음은 다르지 않아요.**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선생님의 인권과 교육권이 같이 존중되는 학교,
**학생과 선생님이 신뢰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